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57421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회계법인

변론 종결 2022. 4. 28.

판결 선고 2022. 6.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2,084,561원 및 그중 1,508,553,891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회계법인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21.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21. 4. 1.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회계법인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7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7.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504,000,000원, 보증기한 2018. 9.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D은행 원주지점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2021. 9. 10.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9. 12.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990,000,000원, 보증기한 2020. 12. 2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D은행 원주혁신도시지점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2021. 12. 29.로 연장되었다(이하 위 두 건의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3)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이하 생략)

4. E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21. 6. 29.경 부도 처리되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21. 10. 1. D은행 원주혁신도시지점에 합계 1,508,553,891원(= 2017. 9. 13.자 대출원금 504,000,000원 및 이자 4,770,739원 + 2019. 12. 30.자 대출원금 990,000,000원 및 이자 9,783,1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보전비용 등 대지급금은 3,005,960원이고, 위약금은 524,710원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연 8%이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C회계법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21. 3. 30.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내지 등록권리자 피고 법인',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 회사는 2021. 4. 1.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법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512,084,561원(= 대위변제금 합계 1,508,553,891원 + 대지급금 3,005,960원 + 위약금 524,71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508,553,8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1. 5.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지연배상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비록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1. 3. 30.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앞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에 피고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1), 이에 원고가 대위변제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21. 3. 30.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969,990,400원²⁾ 이었던 반면 그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³⁾ 액수는 합계 7,784,737,450원 가량이어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광업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질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자이자 수익자인 피고 법인의 악의도 추정된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의 외부감사절차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공익적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악의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의 선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 법인 스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체결일 다음날인 2021. 3. 31. 피고 회사에 대한 '의견거절',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의 감사의견 및 피고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음을 내용으로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법인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수익자인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2021. 4. 1.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7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회사에게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류의준

판사이덕균

별지

- 1)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1. 3. 31. 피고 회사에게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공하여 그 사실이 공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이 2021. 4. 1.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거래정지되기도 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 회사가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의 가치가 50~60억 원

가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